

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43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2월 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(50%→90%)로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인구유입에 따른 도심활력 기대
- 나.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, 신혼부부, 1~2인가구, 사회초년생에게 직주 근접형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

2. 주요내용 (3년 한시 운영: ~ 2022년)

- 가. 한양도성 도심부만 적용되었던 '주거 주용도' 및 '주거비율 90% 완화' 사항을 한양도성 도심부 외 지역까지 확대
- 나. 주거비율 완화(50%→90%)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기준 마련
 - 상업지역에서 주거 용적률 400%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용적률의 1/2는 공공주택 공급
- ※ 한양도성 도심부 및 도심부 외 지역 공통 적용
- 다.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건립 시 용적률 운영체계 신설
- 라. 생활SOC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신설
- 마. 한양도성 높이기준 완화 규정 신설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정책팀 이승준(☎ 4635)

오정민 (☎ 4636)